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되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며, 목재산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에 목구조기술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건의(정책고객 간담회, '26.1.22.)에 대한 후속 조치

3. 주요내용

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2항, 제32조제4항 개정)

1) 법률 개정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
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대상 확대(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목재문화산업진흥회를
추가하여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조사·분석 및 품질관리 기능 수행 기반 마련
다.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위탁 업무 대상 확대(안 제32조제4항, 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1)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목재의 날 기념행사, 목재이용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및 증명서류 발급 업무를 위탁
- 라. 신고포상금 공무원 지급 제외 및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31조 개정)

- 1)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19.12.23.)

마.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에 목구조기술자 추가(안 별표 1의6 개정)

- 1)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를 추가

* (현재)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한 자, 산림기술사 등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종사한 자 등 7개 요건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4.1.1)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사항 반영(임산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의 용어 및 자격명칭 정비(안 별표 2 개정)

- 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반영(목탄, 성형목탄 → 숯, 성형숯)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4.1.1)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사항 반영(임산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11조 개정)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6.7.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는 조문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이하 “목재문화산업진흥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제11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제28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의 날 기념행사

⑥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산림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문화산업진흥회

별표 1의6 제5호 중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을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자격”으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별표 2 제2호 중 “목탄”과 “성형목탄”을 “숯”과 “성형숯”으로 하고 “임산

가공기능사”을 “임산가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 삭제 다. ~ 마. (생략) 3. (생략) ③ (생략)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3. (생략)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이하 “목재문화산업진흥회”----- ----- 다.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① ----- ----- ----- ----- -----. 1. 목재문화산업진흥회 2.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생략)

② 산림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측정한 목재문화지수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3. (생 략)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목재문화산업진흥회

2. 3.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포상금) ①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② (생략)

<신 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신 설>

1. ~ 3. (생략)

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3.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제31조(포상금) ① -----

-----.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목재문화산업진흥회-----.

1.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의 날 기념행사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 -----

-----.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삭 제

3.·4. (생 략)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
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산
림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

6.·7. (생 략)

<신 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
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삭 제>

6.·7. (현행과 같음)

⑥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의 구축·운영에 따른 통계·실태
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산림청
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 발
급 업무를 포함한다)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문화산업진흥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1. ~ 4. (생략)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생략)

<신설>

7. (생략)

<비고>

1. ~ 3. (생략)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생략)

2.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

1. ~ 4. (현행과 같음)

5. -----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자격-----

6. (현행과 같음)

7. 법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현행 제7호와 같음)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全

[illegible]

		서 35시간 이상 임산 가공 관련 교육을 이 수한 사람 1 명 이상		
--	--	--	--	--

3. (생 략)

<비 고>

3. (현행과 같음)

<비 고>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목재산업과	
연 락 처	(042) 481 - 8875